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교회

#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교회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대한예수교장로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 인사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 시작된 미투운동은 성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최근 아동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가 이슈화 되면서 국민들은 어느 때보다 성범죄에 대해 높은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종교계와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성적 일탈에 대한 보도는 충격과 안타까움을 전해줍니다.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총회는 이러한 요청에 응답하기 위해 교회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교회 내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문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매뉴얼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회공동체를 건강하게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총회는 이 일을 위하여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관련 기독교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노회가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여 돕겠습니다. 본 교단이 제작한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전국 교회와 노회가 활용하여 건강한 교회공동체가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국 교회와 노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1년 3월 12일

총회장 **신정호** 목사

#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 목차

- 01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 p 06
- 02 신학적 고백 p 08
- 03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p 10
- 04 교회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p 11
- 05 교회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 p 12
- 06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p 15



**07** 교회와 노회, 총회의 할 일

p 19

**08** 목회자 개인이 할 일

p 21

**09** 성도들이 할 일

p 24

**10**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 (안)

p 26

**11** 성폭력 전문 상담소 기관 안내

p 35

# 01

## 그리스도인의 윤리적 기준

---

“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

(벧전 1:15-16)

“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 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말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벧전 5:2-3)



-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이 윤리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교회의 성결함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이들은 누구나 성경의 윤리적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목회자들은 윤리적인 성결을 유지해야 하며, 교회는 목회자들의 청빙과 목회에 있어서 윤리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지도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 목회자의 성적 비행은 죄이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직업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 신학적 고백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창 1:17)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온전하고 존귀하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막론하고 인간은 누구나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온전성과 존엄성에 대한 어떤 상해도 하나님 형상에 대한 침해이며,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충만하고 온전한 삶을 향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殿)입니다.**

(고전 6:19)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에, 성폭력은 신체에 가하는 폭력임과 동시에 인격과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입니다. 인간의 몸에 행하는 폭력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신앙에 따라서 성령의 전인 몸에 가하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평화와 평등을 위해  
오셨습니다.**

(눅 4:18-19)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유와 정의와 평등의 새로운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억압과 차별과 불평등한 관계를 벗어나서 서로 존중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성폭력은 약자를 억압하는 것이며,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간을 존엄하게 여기고 상호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치유와 재창조의  
영이심을 고백합니다.**

(롬 8:22-24)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성폭력 피해자나 가해자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성차별을 비롯한 일체의 차별에서 벗어나도록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치유하는 영으로 피해당한 모든 이들에게 소생할 힘을 주시며, 새로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는 부당한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를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마 5:9)

교회는 약한 자, 억울한 자, 권위에 억눌린 자들을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으며, 부정행위를 탄핵하고 악을 회개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교회공동체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우며 가해자가 변화되도록 도움으로써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으로 불리던 것을 묶어 ‘성폭력’이라고 부르게 된 까닭은 그것이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심, 그로 인한 행동제한

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우리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5156호)”에서 제시하는 범죄 유형은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 공연 음란, 음화 반포, 음행 매개 등입니다. 강간은 강제적인 성기의 삽입을 뜻하며,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성추행으로 분류합니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을 “업무, 고용 및 기타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그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교회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교회 성폭력은 교회나 기독교 기관, 선교단체 등 기독교 공동체의 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가 종교적인 특수성이나 자신의 권위를 남용하여 성도나 고용된 목회자(목사, 전도사) 혹은 직원에게 성폭력 또는 그와 유사한 성적 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목회적 돌봄 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행위를 빙자하여 행하는 성적 행위는 가해자의 물리적 힘의 행사나 피해자의 저항유무와 관계없이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교회 성폭력의 유형으로는 목회자가 여성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간이 주를 이루며 개인상담, 심방, 안수 등 종교행위나 치유행위를 빙자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회 성폭력은 지도자와 성도 간의 절대적인 위계관계 속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명백하게 성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 비해 법적 해결이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어려우며 성폭력을 중재하는 과정이 교회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 성폭력은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그 후유증은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후유증보다 더 심각합니다. 교회 성폭력은 해당 피해자 뿐 아니라 교회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교회 성폭력 피해 대처 방법

### 피해를 입었을 경우



#### ■ 망설이지 말고 전문기관에 연락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 해바라기센터 등



#### ■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에게 알립니다.

가족이나 친구, 동료 등 주변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조언과 도움을 요청합니다.



#### ■ 증거를 보존해 둡니다.

-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옷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상해를 입었다면, 병원에 가서 “성폭력 피해로 왔다”고 진술하고 진단서를 발급받도록 합니다.



- 강간 피해를 입었다면, 몸을 씻지 말고 48시간 이내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고 증거를 채취합니다.



■ 피해를 기록하고 입증할 증거를 찾습니다.

본인의 감정과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6차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자료들을 확보합니다.



■ 가해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시인과 사과를 받습니다.

- 가해자가 직접 사건을 시인하는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주고받은 문자내용과 통화기록도 남겨둡니다.
- 가해자가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여 강요하거나 회유한 부분이 있다면 관련한 대화를 최대한 자세히 진행하고 녹음합니다.



■ 가해자가 시인하지 않거나 사과가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형법과 성폭력 특별법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교회법에 고소를 원할 경우 먼저 교회의 치리 기관에 알립니다.(당회 또는 특별위원회)
- 교회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회 등 상위 치리 기관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사회법이나 교회법에 고소를 하고 그 과정을 겪는 것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로서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법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회개와 교정의 기회를 주는 일입니다. 또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 ■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의 충격으로 인해 불안과 분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심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회의 대처



- 피해자들이 반드시 상담, 교육, 법적, 의료적 지원, 그리고 치유를 위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사건을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거나 피해자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가해자가 자신의 책임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 교회는 피해자의 회복을 돕고 해당 사건을 정의롭게 처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자도 적절한 처벌과 더불어 치유를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 교회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목회적 지원

목회자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편에 서며 추가적인 성폭력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대면, 고백, 회개 등 책임을 요구합니다. 가능하다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지만 많은 경우에 이 회복은 불가능하므로 그럴 경우 관계의 상실을 애도하며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기에 처한 교인들이 안심하고 목회자를 찾을 수 있도록 평소에 설교나 교육을 통해 신뢰를 쌓고 성폭력 문제 해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폭력 관련 상담소나 기관들과 정보를 나누고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목회자 자신이 성폭력 문제를 불편하게 느낀다면 다른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의료적 지원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각 권역별 해바라기 센터에 방문하면 연계된 병원에서 증거 채취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안내: 여성긴급전화 1366, 각 권역별 해바라기 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자체, 경찰청, 위탁병원 협약으로 운영되며 성폭력 피해자와 보호자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 해바라기센터의 의료지원 ]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증거채취 및 응급의료지원  
(365일 24시간 가능)
-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수탁병원 내 모든 진료 지원
- 예방적 처치(항생제, 사후피임약 등 처방) 및 성폭력으로 임신한 태아의 낙태 또는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성병 등 추적 검사 실시

### 법률적 지원

성폭력에 관한 법률로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처벌되는 성폭력 범죄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혹은 판매하는 행위, 스토킹, 성희롱 등입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은 크게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한 형사적 대응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적 대응으로 나뉩니다. 고소를 원할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여 범죄 발생지 또는 가해자나 피해자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나 검찰에 제출하면 되며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 고소와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강간(형법 제297조)과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의 공소시효는 10년이며 장애인과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에 의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법적 대응은 성폭력 피해 전문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수 있으며 대한 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20-3476-6515)등에서 법률상담, 소송서류 작성 및 소송대리, 형사사건 무료변호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심리적 지원

- 피해자에게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도와줍니다.
- 피해자의 커다란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할 마음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피해경험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경청해 주고 피해자의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 성폭력 피해에 대한 자신의 반응이나 감정을 검토하면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히 성이나 성폭력에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남녀 불평등한 성규범(순결 이데올로기)이나 편파적인 종교적 신념(가령, 가해자를 무조건 용서하라거나 낙태에 대해 무조건 죄악시하는 등)을 가지고 있을 때는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십시오. 고통을 딛고 살아온 용기 있는 태도를 격려하십시오. 긍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피해자가 가진 장점을 격려하고 단점을 인식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 피해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하게 지원해야 합니다.
- 피해 경험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검토하십시오. 또한 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결과와

위험성을 예측하도록 하여 피해자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피해자가 이야기하는 성폭력 경험을 그대로 믿어주십시오.
- 피해자에게 그 상황을 유발했거나, 부주의했거나, 저항하지 않았거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책임이라고 비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사소하다고 여겨지는 성폭력일지라도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가해자를 이해해야 한다는 식의 말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성폭력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 피해자는 후유증을 극복하여 건강하고 새롭게 삶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런 사실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끼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 성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피해자에게 위로하고 싶다는 심정을 전달해야 합니다.
- 피해자는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있으며 인간관계나 자아개념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신분 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을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교회와 노회, 총회의 할 일

### 교회가 할 일

- 교회는 성에 대한 바른 신앙적 이해를 갖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교회는 교인들을 위한 성교육(성폭력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에 관하여 미리 교육하고 공지함으로써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교회는 교회 내 성폭력 예방과 성폭력 사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만일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는 특별 위원회를 사전에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 교회는 교회 내에서 성폭력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우선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교회는 교회 내 성폭력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진상을 규명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회개를 촉구하며, 그와 유사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특별위원회가 성폭력 문제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여러 번 반복해서 증언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거나, 가해자와 선부른 화해를 요청하는 등의 2차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특별위원회에는 교회 외부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문제를 객관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교회는 피해자에게 문제해결을 위해 금전적인 지원을 포함하여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교회는 성폭력 문제 발생 시, 이를 노회에 보고해야 하며 조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관한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 노회가 할 일

- 노회는 교회 성폭력 예방교육을 노회원들에게 격년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목회자 성윤리 지침 서약서를 격년으로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 노회는 성폭력으로 신고된 목회자(목사, 전도사)에 대해서 조사하고 처리해야 하며, 해당 목회자가 시무하던 교회를 사임하고 이후 다른 교회에 청빙을 받게 될 때,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과 처벌을 알려야 합니다.

## 총회가 할 일

- 총회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으로 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총회는 제102회 총회 결의대로 각 노회가 격년으로 노회별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관련 상담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피해자가 전문상담을 받도록 배려하며, 총회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치하여 홍보합니다.
- 총회는 교회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법률 제15156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총회는 성폭력 피해자의 권익을 옹호하고 가해자를 적절하게 처리할 성폭력 예방 및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목회자 개인이 할 일



- 목회자는 언제나 높은 도덕적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 목회자가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 이성관에 대해서 성찰하고 성에 대해 지나치게 금기시하거나 성적 남용에 대해 관용적이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 목회자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목회자는 이성 성도를 심방하거나 상담할 경우, 단 둘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지 않고 다른 교역자나 교인들과 함께 만나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두 사람만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된 장소를 선택해야 합니다.

- 목회자는 이성 성도의 사생활(부부관계나 성적 문제)에 관해 지나치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이야기를 혼자 듣지 않도록 하며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도가 사생활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동성 목회자나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하도록 합니다.
- 목회자는 성도들과의 신체적 접촉에 유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삼가며 성도 간의 신체적인 접촉도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 목회자는 성희롱적인 발언(외모 비하, 성과 관련한 저급한 농담 등)을 삼가며, 남녀의 성 고정 관념에 관한 확신을 부추기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 목회자 스스로의 탈진과 스트레스 상황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육적 탈진을 해소하거나 충전하는 건전한 방법과 자원을 개발합니다.
- 목회자는 성적 타락과 폭력 방지에 대한 총회와 노회의 교육과 상담에 참여합니다.
- 목회자는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고 의논하며 처리할 수 있는 방법과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목회자는 목회자 성윤리 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약서는 격년으로 의무 교육을 받을 때 작성하여 노회에 제출 합니다.)

# 서약서

나는 아래와 같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목회자 성윤리지침<sup>1)</sup>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 나는 높은 도덕 수준을 유지하는 순결한 삶을 추구하겠습니다.
- (2) 나는 교회 내에서 동역자나 교우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성적인 대상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 (3) 나는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총회의 교육에 참여하며, 필요 시 총회나 노회에 성문제 상담을 요청하겠습니다.
- (4) 나는 교회 내 사역자들에게 성폭력을 예방하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 (5) 나는 목회자도 성적 존재임을 받아들이며, 성적인 유혹을 극복하도록 성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동료들 갖겠습니다.
- (6) 나는 양성 간의 평등과 정의가 교회와 사회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나는 아래와 같은 조항에 대해 인증하고 관련사항의 조회를 허락합니다.

- (a) 사회법이나 교회법으로 본인의 성적 비행에 대하여 처벌을 받거나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b) 위와 관련하여 사회법과 교회법의 결과 조회를 허용합니다.
- (c) 서약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권징과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1) 이윤리지침은 2015. 9. 17. 제100회총회에서 채택된 것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성도들이 할 일



-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도록 합니다. 불쾌한 신체접촉이나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이성 목회자와 단 둘이 심방하거나 상담하는 행동을 삼가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도록 합니다.
- 목회자가 필요 이상의 지나친 관심과 관계를 요구할 때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며,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관계에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며, 평소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예비지식과 대처 방법을 익혀 둡니다.
- 성도는 목회자도 인간이며, 성적 문제와 관계에 있어 취약해질 수 있음을 인지 하고, 이성적 대상으로 투사하지 않으며, 존경과 왜곡된 영적 권위를 분별합니다.
- 목회자는 전문적인 심리상담사가 아닙니다. 자신의 부부관계를 포함한 성적 인 문제, 또는 심각한 우울증 등 병리적인 문제가 발생 할 경우, 목회자가 아닌 전문상담사를 찾아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 목회자의 성희롱적 농담, 여성비하적 발언,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을 지적해야 합니다.
-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담소나 전문기관의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피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외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합니다.
- 주변에서 사건이 발생 시 피해자를 만났을 때 공감과 정서적 지지를 하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총회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지침(안)

이 지침(안)은 교회와 노회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성폭력 사건이 신고 및 접수되었을 경우, 교회와 노회가 사건 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한 지침(안)입니다. 여성가족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2018. 6.)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Ⅰ. 교회(당회)

####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교회는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 2. 초기대응 (교회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접수 시)

- 1) 교회(당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격리하여 조치하고,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한다.
- 2) 교회(당회)는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3) 교회(당회)는 피해자를 지원한다.(심리적 안정 지원, 의료 및 상담지원)

- 4) 목회자(목사, 전도사) 또는 장로가 가해자인 경우,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가해자는 목회 및 선교, 교회 활동을 중지해야 한다.
- 5) 교회(당회)는 사건 심의 결정 시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징계 후 사직서를 처리한다.

(※ 현행 공무원법 준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참고)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시행 2019. 4. 30. 대통령훈령 제 401호, 2019. 4. 30, 일부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3.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그 밖의 수사기관 (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 3.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 및 심의

- 1) 피해자의 피해 사항 및 요구 사항을 파악한다.
- 2) 목격자 및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 3) 가해자를 소환하여 조사한다.
- 4) 사건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회에 보고한다.  
(당회가 없는 경우,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모임에 보고한다.)
- 5) 모든 조사는 사건 접수일로부터 최소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 6) 특별위원회는 진상 조사 진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
- 7) 모든 절차는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목격자 및 제3자에게 비밀유지의 원칙을 공지하고, 조사위원은 사건의 관계자 신원 및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 4. 교회(당회)의 징계

(현행 총회 헌법으로는 치리가 어려우므로 교회(당회)차원에서 징계를 한다. 당회가 없는 경우, 제직회, 공동의회 등 교회를 대표하는 공적 모임에서 징계의 정도를 논의하고 징계한다.)

-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의 진상조사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는다.
- 2)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
  - 가. 가해자가 목사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절차에 따라 노회에 심의결과를 제출하고, 징계를 요청한다.

나. 가해자가 전도사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교회(당회) 차원에서 징계 정도를 논의하고 징계하며, 노회가 지도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노회가 절차에 따라 지도하도록 노회에 보고한다.

다. 가해자가 장로일 경우,

: 심의 결과를 당회 및 공동의회에 공개하고, 교회(당회) 차원에서 징계 정도를 논의하고 징계한다.

3) 심의 및 징계 결과를 당사자(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통보한다.

## 5. 종결 및 조치 이행

1) 가해자를 조치한다.

2) 교회(당회), 공동의회, 노회에 보고한다.

3) 피해자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4)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II. 노회

###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노회는 교회성폭력 사건 발생 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을 홀수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폭력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으로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성폭력 전문가는 외부인도 가능하다. 위원회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이 불가할 시 노회 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2. 초기대응

(지교회 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로 목사의 신분 처리 및 교회 성폭력 사건 접수 시)

- 1)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2) 가해 목사가 ‘자의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사직서 수리를 보류하고, 조사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 후 사직서를 처리해야 한다.

(※ 현행 공무원법 준용: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 참고, p. 2 참조)

### 3.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진상조사 및 심의

- 1) 해당 당회의 진상조사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다.
- 2) 목격자 및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한다.
- 3) 피해자와 가해자를 소환하여 분리 조사를 한다.  
(피해자의 경우 중복 진술하지 않도록 1차 진술서를 채택할 수 있다.)
- 4) 사건을 심의하고,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회 임원회에 보고한다.

#### 4. 노회의 처리

- 1) 노회 임원회는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확인한다.
- 2) 심의 결과 확인 후, 죄과가 확인되면 노회장은 임원회의 결의에 따라 기소위원회에 기소 의뢰할 수 있다.
- 3) 성폭력 가해 목회자가 '교단탈퇴서'를 제출한 경우라도 노회임원회는 처리 없이 수리할 수 없다.
- 4) 성폭력에 관한 죄과와 기한은 사회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 5) 기소위원회를 거쳐 노회 재판을 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 가. 가해자가 목사나 장로일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 나. 가해자가 전도사일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노회가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 5. 종결 및 조치 이행

- 1) 가해 목회자(목사, 전도사) 및 장로를 처리하고 정기 노회에 보고한다.
- 2) 성폭력 이력 목회자의 이명, 청빙 과정에서 해당 교회가 목회자의 성폭력 관련 사실을 노회에 요청할 시, 반드시 정보를 제공한다.
- 3)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노회원의 성폭력 예방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 현재 노회의 처리 기준이 없으므로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내부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 참고. 교육공무원법 징계 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교육공무원법 제52조)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sup>1)</sup>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sup>2)</sup>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sup>3)</sup>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 1) 제83조의2(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0.3.22, 2012.3.21, 2015.5.18>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 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 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 3)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성교행위
-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참고. 교육공무원법 징계 기준 (제2조1항 관련)

2019년 3월 18일 시행

비위의 정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의 정도가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 위의 정도가약 하고 고의가 있 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유형				
<b>7. 품위유지업무 위반</b>				
가. 성희롱	감봉-견책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
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파면
다. 성매매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	파면
라.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해임	파면-해임	파면	파면
마. 성폭력	해임	파면-해임	파면	파면
바.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해임	파면	파면	파면
사. 공연음란, 불법촬영	감봉-견책	강등-정직	파면-해임	파면
아.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불법촬영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파면
자. 성희롱 행위 등 소속 기관 내 의 성(성) 관련 비위 피해자에 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피해자 신상유출, 권리구제 방해, 폭언 및 본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등)	감봉-견책	해임-강등-정직	해임	파면
차. 그 밖의 성 관련 비위를 저지 른 경우	감봉-견책	해임-강등-정직	해임	파면
카. 학생의 신체 또는 정신의 건 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또는 정서적 폭력	감봉-견책	강등-정직	해임-강등	파면-해임
<b>비고</b> *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른 성희롱 <sup>4)</sup>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중 성희롱 <sup>5)</sup> 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7호에서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유 포 등 일련의 행위 <sup>6)</sup> 를 말한다.				

- 4) 성희롱[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행위
- 5)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 행위
- 6)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 성폭력 전문 상담소 및 기관 안내

###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 전화상담 및 문의 070) 5092- 5417(월 - 금 9:30-17:00)
- 온라인 상담 및 문의 pckreport@pcknet.org (수시 접수, 회신은 근무일)
- 담당업무
  - 1) 교회 성폭력 사건 1차 문의 및 접수 (상담)
  - 2) 전문 상담기관 연결 (피해자 요청 시)
  - 3) 교회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심의
  - 4) 교회 성폭력 사건 진상 조사 및 심의 결과 보고 (총회 임원회), 고지 (해당 기관)

### 총회와 업무협약(MOU)기관 및 센터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www.crisis-center.or.kr](http://www.crisis-center.or.kr) (소장 : 박윤숙)

- 전화상담 02-883-9284 (월-금 9:00-18:00)
- 면접상담 전화예약 후 가능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3층 301호
- 연락처
  - 사무 02) 883-9285
  - 상담 02) 883-9284
  - Fax 02) 883-9281 5
  - E-mail crisis119@hanmail.net

**/ 기독교 여성상담소** [www.8275.org](http://www.8275.org)

(소장 : 채수지)

- 전화상담 02)2266-8275 (월-금 10:00-17:00)
- 면접상담 전화예약 후 가능
- 온라인 상담 및 문의 [www.8275.org](http://www.8275.org) (상시)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55길 6(영등포동 7가, 여성미래센터)

**/ 희망나무(장신상담)센터** [www.hopetreejs.or.kr](http://www.hopetreejs.or.kr)

(센터장 : 홍인중)

- 문의전화 및 상담 예약 02) 3437-0195  
모든 상담은 사전예약 후 진행  
(월-금 9:30 - 17:00, 목요일 야간상담 가능)
-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80 의성빌딩 3층

■ 기타 성폭력 전문상담소 및 신고 기관

- 여성폭력사이버상담 [www.women1366.kr](http://www.women1366.kr) ☎ 여성긴급전화 1366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www.stop.or.kr](http://www.stop.or.kr) ☎ 02)735-1050
- 한국성폭력상담소 [www.sisters.co.kr](http://www.sisters.co.kr) ☎ 02)338-5801~2
-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www.womenlink.or.kr](http://www.womenlink.or.kr) ☎ 02)335-1858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http://www.klac.or.kr) ☎ 132
- 한국여성의전화 [www.hotline.co.kr](http://www.hotline.co.kr) ☎ 02)2263-6464~5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http://www.kdawu.org) ☎ 02)3675-9935
- 서울해바라기센터\* [www.help0365.or.kr](http://www.help0365.or.kr) ☎ 02)3672-0365

\*해바라기센터는 현재 권역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해바라기센터 홈페이지와 상담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우리교회

교회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매뉴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03128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3길 29, 602호  
(연지동,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

Homepage. [www.pck.or.kr](http://www.pck.or.kr) TEL. 070 - 5092 - 5417 / FAX. 02-741-4355 / E-mail. [pckreport@pcknet.org](mailto:pckreport@pcknet.org)